

#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71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12월 17일

제안자 : 도시안전건설위원장

## 1. 제안이유

- 금년 6월 코로나-19 사태 장기화 또는 기타 돌발적인 재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(구호계정, 재난계정)의 재원에 ‘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채’를 추가하며,
- 부칙 제2조에 재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의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한 바 있으나, 코로나-19 재확산에 따른 대유행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사태의 종식을 예측하기 힘들므로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에 관한 개정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채를 재난관리기금(구호계정, 재난계정)의 재원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함(안 부칙 제2조).

### **3. 참고사항**

가.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나. 기타사항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 
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부 칙	부 칙
제1조(시행일) (생략)	제1조(시행일) (현행과 같음)
제2조(유효기간)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<u>2020년 12월 31일</u> 까지 효력을 가진다.	제2조(유효기간) ----- ----- <u>2022년 12월 31일</u> -----.